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21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- 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29. 제62회평창군의회(정기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현행 시·군마다 다르게 재정 운영되고 있는 기구,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시·군별로 통일을 기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목적
- 나. 실·과장의 직급 등 규정
- 다. 실·과의 설치
- 라. 직속기관의 설치 및 소관사무의 규정
- 마. 사업소의 설치 및 소관사무의 규정
- 바. 읍면 및 출장소의 설치와 소관사무의 규정
- 사. 평창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, 평창군보건진료소설치
에관한조례, 평창군농업기술센터운영및운영조례, 평창군위생
환경사업소설치조례 및 평창군읍·면출장소설치조례 폐

4. 검토 의견

- 가. 조직개편에 마취 '98. 9. 16일 제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, 평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 운영조례, 평창군읍·면출장소조례가 의결되어 개정된 바 있음.
- 나. 이에 강원도 표준안에 따라 위의 조례와 평창군보건의료원 및보건지소설치조례, 평창군보건진료소설치에관한조례,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등을 추가하여 평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관리코자 하는 것임.
- 다.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